
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제도안내

건설·전기·정보통신·소방공사 분야



관련법규

-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(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)

기술지도 대상

1.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(토목 : 150억) 미만의 건설공사
2.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 미만의 전기, 정보통신, 소방공사
3.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

기술지도 내용

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 등

- ①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
- ② 안전·보건교육 및 안전관련 양식 등 제공
-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
- ④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

☑ 계약시 필요서류



발주자 사업자 등록증 및
공사도급계약서



도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및
산재가입증명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



공사담당자 연락처
(명함)

☑ 기술지도계약 및 횟수

건설공사,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공사를 발주하는 **건설공사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**은 기술지도계약서식(산안법 별지 104호 서식)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 전일 까지 체결함

기술지도 횟수

착고일로부터 월 2회 [공사기간(일) / 15일 ※소수점은 절사]

※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

법 제73조를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

연락처(관할지역)

대한산업안전협회

대전 / 충청도	042)936-2160	대구 / 경상도	053)710-3108	강원도	033)734-6201
광주 / 전라도	062)941-0156	인천 / 경기도	031)382-9988		

☑ **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**
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

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관련법에 의거, 착공 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'유해위험방지계획서'를 작성해야 하고, 시공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'안전관리계획서'를 작성해야 합니다.

☑ **안전관리계획서**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

협회에서는 현장에서 작성하는 각종 '안전관리계획서'에 적절한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
☑ **건설업 위험성평가컨설팅**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

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'위험성평가'를 실시해야 합니다. 협회는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올바른 평가 방법 및 그 실행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☑ **설계안전성검토(DFS)**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

시공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, 건설공사 설계자는 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☑ **안전보건대장**
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

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·설계·시공 단계에서 중점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 방안이 담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·제공·확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, 산업재해예방에 이바지합니다.

☑ **건설업 안전보건진단**
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

예방을 위한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, 개선 대책 수립

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재해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하고, 안전 조직, 교육 등의 '관리적 안전활동'과 추락, 붕괴, 폭발, 협착 등 다양한 '기술적 안전보건 사항'을 조사·평가합니다.

이를 통해 안전보건 상태를 파악하고 작업 진행 중 위험요소를 도출해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 조치와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, 잔여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.

☑ **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**
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

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(토목공사 150억)인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'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'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. 협회에서는 수준 높은 기술지도를 통해 근로자 재해예방과 견실시공을 뒷받침 합니다.

